

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
번호

2811

김 경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강서1)

□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2016년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동물원과 수족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에 포함되었으나, 여전히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일부 동물원·수족관의 동물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이에 서울시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, 조례 위임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5조부터 제9조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 안 제10조의 경우, 시장이 관할 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안 제11조의 경우,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